

제1조(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① 투자일임의 범위

1.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2.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는 합리적 자산운용방식 선정
3. 합리적 자산운용방식에 따른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가.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명의로 투자일임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자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행위
- 다.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
5. 기타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대한 투자일임
6.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지 아니합니다.

②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1. 예금(타사), 적금(타사), 예탁금, 조세특례법시행령 제93조의4 제8항 제1호에 따른 예치금
2. 조세특례법시행령 제93조의4 제8항 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
5.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 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 의 주식
7.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제2조(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 ① 회사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고객과 운용유형 및 기타 운용조건을 협의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회사에 예탁한 고객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은 성립 됩니다.
- ③ 회사는 편입되는 투자일임자산의 성격상 별도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 타 금융기관에 투자일임자산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 자산을 운용하며,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있어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은 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⑤ 고객은 자산운용내용을 투자일임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 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백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백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계약유형의 최소가입금액 이상 투자일임자산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은 현금에 한합니다.
-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이 부담할 책임의 내용)

①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산운용사 및 운용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가.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합니다.

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과의 연락두절,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퇴사, 전출 등 선임된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일임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후 지체없이 동 변경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4. 회사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의 회사의 금지행위를 참조하십시오.

② 고객의 의무 및 책임

1.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한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3.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4. 자산인출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 등의 일임투자재산은 현금화에 일정기간(매도 후 결제)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인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국내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최장 5일 이전에 신청
나.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환매기간+2일
(영업일기준) 이전에 신청 (일반적으로 10~12일
소요되나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7조(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보수의 산정

1. 보수의 계산
기본(일반)보수는 고객께서 선택한 계약유형 및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평균 평가액에
해당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 보수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2. 보수 계산의 일반식

기본(일반)보수 = 투자일임재산의 평균 평가액
× 연보수율 × 연간경과일수/365

② 보수의 징수방법 및 시기

1. 매분기 최초 영업일(이하 보수 출금일)에
고객의 현금성 자산 등에서 인출합니다. 고객의
현금성 자산이 MMF인 경우, 주기적인 투자일임
보수 출금거래에 대하여 관계법령, 집합투자증권
개별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 출금일 현재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당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징수합니다. 단, 전분기말 기준
또는 만기해지시, 보수를 차감한 계좌별
평가금액이 원금미만일 경우 면제합니다.

3. 고객은 현금성 자산 등에 현금이 부족하여
보수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수 납부기한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보수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4. 보수 납부기한 내에 보수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계좌의
투자일임자산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보수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3호의 현금 납부 및 투자일임자산의
처분으로 보수를 충당하는 경우 연체료를
징수하며 회사가 정한 일반적인 미수연체료
처리절차를 따릅니다.

③ 추가비용의 징수

회사는 보수 외에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세금 및
기타비용,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을 고객
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제8조(고객 투자 성향별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은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자산배분이 이루어집니다.

②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1.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2.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른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다만, 초저위험
유형의 경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종: 예·적금,예탁금,예치금(금융투자상품제외),
환매조건부매매증권>

<2종: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3종: 파생결합증권>

3.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 결합
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편입 하는 행위

4. 계약만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의
편입금지. 다만, 고객이 편입동의한 경우 제외
합니다.

③ 분산규정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까지 적용유예 합니다.

1.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2.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개시 시점부터 3개월
까지

3.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만기 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제9조(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① 투자실적 및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집합투자증권은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제공하는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ELS등 파생결합증권은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시가 또는 회사에서 정한 이론가로 평가합니다.

3.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시가기준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배분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실행(운용)시 통보방법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 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
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전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해당 투자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④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회사는 투자결과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고객
에게 분기 1회 이상 직접, 우편 또는 전자메일
중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발송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보고서 발송시기
1 월-3 월	4 월
4 월-6 월	7 월
7 월-9 월	10 월
10 월-12 월	1 월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의 변경

1. 회사는 수수료 징수기준 등의 약관 변경시
시행 1개월 전에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의 시행일
1개월 전일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
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에 응합니다

②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해지일 중
빠른 날(손익통산시점)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를 이용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5.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투자일임자산의 보유, 일부 또는
전부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중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는 개별약관에
따라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고객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좌에서
투자일임 재산을 중도에 해지,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금융상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 하여야 합니다

7.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의 종도해지

1. 회사는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제10조 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 으로부터 추정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④ 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지

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의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시장 상황이나 금융상품의 성질 등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 종료나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종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의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고객에게 현금화하여 지급하거나, 운용현상 대로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현금 환가를 선택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나 금융상품 성질 등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적격자 통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정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계좌보유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효율적 매매를 위한 주문처리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다수 고객의 매매 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고객계좌 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투자일임계좌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합니다.

1. 고객계좌별 주문기록 작성 및 보관: 계좌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 보관합니다.

2. 매매결과에 대한 고객 계좌별 배분: 매매 결과에 따른 자산은 제2항 제3호의 배분기준에 따라 각 계좌 별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3. 배분기준

가. 배분수량: 매매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배분합니다.

1) 1차배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정수의 수량만을 배분

2) 2차배분: 정수로 배분 후 남은 수량은 체결 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3) 3차배분: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4) 4차배분: 체결배분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분, 추후에는 계좌번호 낮은 순서대로 배분처리

나. 배분가격: 매매종목에 대한 총 체결금액을 전체 체결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사용합니다.

다. 금액의 배분: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된 수량과 배분가격을 곱한 배분금액을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가장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배분금액이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배분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1원씩 배분하여 각 계좌별 배분금액을 산출합니다.

라. 매매단가 및 수량: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금액을 배분수량으로 나눈 매매단가를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원단위 미만 올림과 버림한 두개의 정수단가를 산출하고, 해당 단가별 수량을 계산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결제처리 후 매매단가와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특정계좌에서 자산구성이 운용자의 운용전략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배분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달리 적용 또는 별도의 주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12조(투자일임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별지1.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 경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고객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 내 전문 운용 인력이 운용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담당매니저에 대한 정보는 별지에서 제공됩니다.

② 고객은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은행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별지2. 은행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금지사항

자세한 사항은 「별지3. 회사의 금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투자일임계약의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3.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계약유형 및 투자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모든 과거운용 성과자료 또는 모의운용 성과자료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당행은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권유문서 및 부속 별지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대상, 운용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주요경력

1. 투자일임 담당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최성호	<p>조사분석 13년, 자산운용 13년</p> <p>現) 우리은행 일임형ISA 운용역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p>
박형열	<p>자산운용 8년</p> <p>現) 우리은행 일임형ISA 운용역 NH농협은행 WM연금부(일임형ISA 운용) SK증권 Equity파생팀 SK증권 장외파생상품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취득</p>

2. 제 1항의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없음)

[별지2. 은행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은행의 임원

(2023년 7월 3일 기준, 단위 : 주)

성명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조병규	은행장	등기임원	상근	총괄	'18.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상무/부행장보 '20.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22. 우리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23.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
양현근	상임감사위원	등기임원	상근	감사	'15.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6. ~ '19.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20. ~ '23. 엘칸토 감사, 카사코리아 고문	-
정찬형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7.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15.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
김준호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13.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15.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現) 법무법인 올촌 고문	-
박승두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7.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現)한국법률경영연구원장 現)한국채무자회생법연구소장	-
윤수영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07. 키움증권(주) 경영기획실장, 영업지원본부 자산운용본부 총괄전무 '10.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16. 키움증권(주) 부사장	-
이석태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영업부문	'17.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본부장 '19.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단 상무 '20. 우리금융지주 신사업총괄 전무 '20. 우리금융지주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22.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	-
강신국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기업투자금융부문	'20. 우리은행 IB그룹 상무 '20. 우리금융지주 CIB총괄 상무(겸직) '20. 우리종합금융 CIB사업본부총괄부사장(겸직) '20.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보 '22.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	-
이문석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자금시장그룹	'17.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8. 우리은행 미래2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19. 우리은행 증권기업전략영업본부 영업본부장 '19.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0. 우리은행 IB그룹 집행부행장보	-
고정현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IT그룹	'16. 우리은행 플랫폼사업부 본부장 '17. 우리은행 강서양천영업본부 영업본부장 '18. 우리은행 정보보호그룹 상무 '20. 우리은행 정보보호그룹 집행부행장보	-
장광익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브랜드홍보그룹	'12~'13.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차장 '13~'17. MBN 정치부장 '17~'22. MBN 사회부장, 시사제작부장, 경제부장 '22~'22. MBN 보도국장, 기획실장	-
성윤제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여신지원그룹	'16. 우리은행 여신정책부 부장 '18. 우리은행 여신정책부 본부장 '19.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인천부천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윤석모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그룹	'14. 우리은행 영업지원부 부장 '15. 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8. 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본부장	-

성명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송현주	집행부행장	미등기임원	상근	자산관리그룹	'18.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고객센터 본부장 '20. 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본부장 '21. 우리은행 동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2.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그룹 집행부행장보	-
김백수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정보보호그룹 (정보보호최고 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고객정보관리인)	'18. 우리은행 IT지원센터 부장 '19. 우리은행 IT기획부 부장 '19. 우리은행 IT기획부 본부장 '20. 우리은행 IT전략부 본부장	-
유도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그룹 (공시책임자 내부회계관리자 전략기획·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15. 우리은행 비서실 실장 '17. 우리은행 런던지점 지점장 '21. 우리은행 런던지점 본부장	-
옥일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디지털전략그룹 (최고디지털책임자 (CDO))	'09. 더보스톤컨설팅그룹 컨설팅팀 Principal '18. EY컨설팅 전략부문 리더(파트너) '20. 에이티커니코리아 금융그룹리더(부사장)	-
기동호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IB그룹	'13.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지점장 '14. 우리은행 미래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16. 우리은행 동역삼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 본부장	-
김범석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부동산금융그룹	'12. 우리은행 삼성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14. 중국우리은행 부장대우 '18.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18.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부장(심사역) '19.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본부장(심사역)	-
류형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외환그룹	'17. 우리은행 광희동지점 지점장 '19. 우리은행 무역센터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외환업무센터 본부장 '20.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 본부장 '21. 우리은행 인천부천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박구진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감시인	'17. 우리은행 인사부 부장 '19.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9.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강북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중앙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박장근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리스크관리그룹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15.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부장 '16.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부장 '19.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본부장 '20.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영업본부장 '21.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본부장	-
조병열	집행부행장보	미등기임원	상근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CCO))	'16.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17.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부장 '19.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본부장 '20. 소비자보호부 본부장 '21. 우리은행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2.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지분을

(단위 : 주, 기준일 : 2023.6.30)

관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최대주주	(주)우리금융지주	716,000,000	100.00	-

[별지3. 회사의 금지행위]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와 관련된 특정증권 등(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 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자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2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라.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마.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바.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

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